

당 기관의 기록 자료에 따르면, 귀하는 상수도/하수도 요구청구서 상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. 귀하의 요금청구서는 CCWD 의 웹사이트(www.ccwd.org)를 통하여 또는 전화(844 516-4349)로 요청하여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요금청구서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월 - 금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 사이에 전화(209 754-3543)나 이메일(customerservice@ccwd.org), 또는 당 사업소(120 Toma Court, San Andreas) 방문을 통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체납 금액 전체에 대하여 위의 독촉장에 명시된 기한 일자까지 CCWD 를 방문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(근무시간 후에는 당 사업소에 마련된 안전한 방문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), 그렇지 않을 경우, 귀하의 고객계정에는 기한 경과 수수료 \$18.00 가 부과되며, 체납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, 서비스 공급 중단 예정 일자와 시간을 명시한 태그를 서비스 공급 대상 주소지의 재산에 부착하게 됩니다. 미납요금을 기 납부한 경우, 귀하께서 CCWD 에 연락하여 그러한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급수중단 예정 일시 이전에 미납요금이 당 사업소에 전액 납부 처리되지 않을 경우, 급수서비스가 중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귀하께서 그러한 미납요금 전액을 급수중단 예정 일시 이전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, CCWD 에서는 납부 연장을 위한 조치 협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납부 연장조치 검토를 위해, 본 통지서를 수취한 즉시 납부연장요청서를 작성하여 CCWD 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급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입자들은 체납 고객계정의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, 신규 고객계정 수수료와 보증금 납부/예치 후에 CCWD 의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CCWD 의 상세한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:
www.ccwd.org/watershutoffprotection.

미납요금은 현금, 수표, 신용카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서비스 공급이 중단 조치된 경우, 반환된 수표 관련한 제반 수수료 외에, 중단 조치 수수료, 서비스 복원 수수료 및 보증금을 비롯하여, 여타 관련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미납요금에 대한 일부 납부 시, 서비스는 복원되지 않습니다. 어떠한 추가적 통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.